

다산학 39호 (2021.12) | 167~210

가장본家藏本『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의 서지적 고찰

김성재 |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목차

1. 서론
2. 구본舊本『상서고훈』 3권 1책
3. 『상서지원록』 4권 2책
4. 『상서고훈』(합편) 3권 1책
5.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가장본家藏本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의 특징을 서지적으로 검토하고, 그동안 보고된 활자본과 이본들을 비교하여 각 이본들의 선후와 필사 시기를 살펴본 것이다. 가장본에는 1810년 가을에 완성한 구본舊本 『상서고훈』(이하 ‘구본’)과 1811년에 완성한 『상서지원록』, 『상서지원록』을 조목조목 나누어 구본에 붙여넣고 새로운 설을 덧붙여 1834년에 완성한 『상서고훈』(이하 ‘합편’)이 들어 있는데, 모두 일부만 있는 결절缺帙이다.

정약용은 1810년에 경문이 전해지는 『상서』 58편 중 고문古文 25편은 모두 위작僞作임을 변증한 『매씨상서평梅氏尙書平』 9권을 완성하였다. 이어서 이 25편을 제외하고 복생伏生이 전한 진고문 30편¹⁾을 대상으로 공영달孔穎達의 『상서정의』와 다른 경의 주소注疏에 인용되어 있는 『상서』에 관련된 구양생歐陽生, 하후승夏侯勝(大夏侯), 하후건夏侯建(小夏侯), 마융馬融, 정현鄭玄 등 한나라 학자들의 주석을 채철採綴하고, 『사기』, 『설문해자說文解字』 같은 책에 실려 있는 『상서』의 문구를 찾아 모아서 이동異同을 살펴보고, 『춘추좌씨전』, 『국어』, 『예기』, 『논어』, 『맹자』 등에 간혹 『상서』를 인용한 것이 있으면 역시 채록하여 차례대로 편집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1810년 가을에 구본 6권을 완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채철한 고훈과 매색·채침蔡沈의 설을 비교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 7권을 이듬해인 1811년에 완성한다. “책을 읽을 때 먼저 자의字義를 알아야 구절을 해석할 수 있고, 구절의 뜻을 알아야 장章의 뜻을 알 수 있고, 장의 뜻을 알아야 편의 대의大義를

1) 『상서고훈』에서는 「고요모阜陶謨」와 「익직益稷」을 한 편으로 합하여 29편으로 되어 있다.

알 수 있다.”²⁾라는 자신의 독서법에 따라 차례대로 연구를 진행해 간 것이다.

이상의 연구에 대해 정약용은 “참고할 서적이 적은 적소謫所에서 지은 것이라 빠뜨린 것이 많고, 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변송辨訟할 때 어투가 거칠고 공손하지 못한 데가 많아 언행에 소양이 없었음을”³⁾ 두고두고 후회하다가 만년에 이르러 두 책을 합편 개수改修하여 『상서고훈』(이하 ‘합편’)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구본과 『상서지원록』은 합편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상서지원록』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상서고훈』에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삭제한 부분도 적지 않으므로 다산 상서학尙書學의 성숙 과정을 여실히 알게 해주는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뿐 아니라 말미에 부록되어 있는 「상서지원록 목차괄의尙書知遠錄目次括義」 130조條는 다산 상서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알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하겠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이 책은 다산이 ‘버린’ 것이다.”⁴⁾라는 평가는 『상서지원록』에만 국한되지 않고 구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다산 사후 후손들 역시 다산의 저술 목록을 정리하면서 이 두 책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저작 시기에 따라 정약용의 『상서』 연구가 어떻게 변화·발전해 갔는지 그 성숙 과정을 알게 해주는 자료로서 구본과 『상서지원록』은 여전히 일정한 가치를 지닌다.

2) 『尙書知遠錄』, 「序」(『정본』 제11책, 26쪽). “字義通而後句可解, 句義通而後章可析, 章義通而後篇之大義斯見.”

3) 「尙書古訓知遠錄合編序說」(『정본』 제11책, 28쪽). “顧此三部, 皆於謫中編纂, 書籍既少, 遺漏甚多. 且新得一闕之味, 沾沾自喜, 所辨訟, 其辭氣多暴慢不恭. 如今二十有四年矣, 每一披閱, 恍焉內疚, 恤焉自傷, 悼言行之無素也.”

4) 김언중, 「『여유당전서보유與猶堂全書補遺』의 저작별 진위문제에 대하여(下)」, 『다산학』 11호, 2007, 다산학술문화재단, 341쪽.

가장본 외에 이 책들의 이본으로는 일본 쓰쿠바筑波대학부속도서관(쓰쿠바대본)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규장각본)에 구본의 필사본이 있고, 미국 버클리대학 아사미淺見문고(버클리대본)와 규장각(규장각본)에 『상서지원록』의 필사본이 있으며, 1968년 경인문화사에서 간행한 『여유당전서보유』 제5책에 『상서지원록』(보유본)의 필사본이 영인 수록되어 있다. 합본 『상서고훈』은 필사본이 없고 1936년 신조선사에서 간행한 『여유당전서』에 수록된 연활자본(신조선사본)이 유일하다. 2012년 간행된 정보 『여유당전서』에는 구본은 포함되지 않고 합편 『상서고훈』이 권11과 12, 『상서지원록』이 권37에 수록되어 있다.

이 이본들에 대해서는 『여유당전서』 정본화 과정에서 조사한 이본들을 분석한 여러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고, 『상서』 주석서를 전문으로 다룬 연구로는 김문식의 논문이 있다.⁵⁾ 김문식은 정보 『여유당전서』의 『매씨서평』에 수록된 저술까지 포함한 『상서』 주석서 전반에 대해 각 이본들의 계승 및 필사 시기를 추적하였다. 또 김보름은 최근 『상서고훈』의 성립과 개정 과정을 규명한 논문⁶⁾에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장본家藏本 『상서고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본고는 먼저 가장본 『상서고훈』 2종과 『상서지원록』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성격을 고찰하고, 각 이본들과의 비교를 통해 각 본의 선후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가장본은 김영호金泳浩 교수가 소장하던 것으로 그간의 연구에서 定稿本으로 간주할 만한 원본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⁷⁾ 김영호는

5) 김문식, 「다산 정약용의 『상서』 주석서 계열 고찰」, 『다산 필사본 연구』, 다산학술문화재단, 2019. 이 논문은 『다산학』 23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3에 게재한 것을 재수록한 것이다.

6) 김보름,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저술과 개정 과정 연구」, 『儒學研究』 56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1.

7) 노경희(2010)는 “고본稿本은 편자編者 또는 저자著者가 글 내용을 엮거나 고안하여 처음

「與猶堂全書의 텍스트 검토」에서 가장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고본稿本의 광곽匡郭은 19×12.5cm로서 10행 22자로 되어 있고 광외郭外에도 추가 설명 및 개정기술이 있다.
- 2) 고지오사괘선稿紙烏絲界線에 비단실 장선裝線이 있는데 4마디로 묶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 3) 본문 속에 수정가필이 있고 정서한 후에 다시 삭제하도록 표시한 부분, 가고可考라고 하여 재검토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다. 아울러 중요한 부분에는 ○표의 주인朱印이 있다.
- 4) 필체筆體는 인쇄체로 정다산 자필인 것이 대부분인 것 같으나 자필도 몇 개의 체가 있고 또 제자의 필체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다.
- 5) 표지表紙의 총편차總編次는 권수미정卷數未定인 채로 되어 있으나 권수卷數를 정하고도 지워 버린 것이 많으며 대체로 3권이 책을 이루고 있다. 표지 글씨는 모두 다산 자필로 보인다.⁸⁾

노경희는 “본문 곳곳에 홍·청·묵색의 관주를 달거나 비점을 찍은 곳이 있다. 김영호가 ‘중요한 부분에는 ○표의 주인朱印이 있다.’고 한 것은 이를 일컫은 말인 듯하다.”라고 가장본의 특징을 추가하였다.⁹⁾ 『상

쓴 책”이고 “고본을 마지막으로 손질하여 내용을 완전히 정리한 것을 정고본定稿本”이라고 구분하였다. 가장본의 두주頭註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는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손질하여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丁茶山研究의 現況』, 민음사, 1985, 29쪽; 장동우, 「『여유당전서』 정본사업을 위한 필사본 연구」, 『다산학』 7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5, 157쪽에서 재인용.

9) 노경희, 「다산 저술의 형성과 유전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다산 필사본 연구』, 다산학술문

서고훈』과 『상서지원록』에도 위의 특징들이 모두 나타난다.

2. 구분舊本 『상서고훈』 3권 1책

1) 표지와 본문 구성

이 책은 처음 6권 2책으로 만들어졌는데 가장본은 권1, 2, 3이 없고 권 4, 5, 6이 1책으로 묶여 있다. 표지에는 오른쪽에 ‘尙書古訓 四五六’, 왼쪽에 ‘與猶堂集 十 舊本’이라고 적혀 있다. ‘구분舊本’이란 이것과는 다른 ‘신본新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표현이다. 이는 1834년 이 책과 『상서지원록』을 합편하여 『상서고훈』(합편)을 만든 뒤에 두 책을 구분하기 위해 붙인 것으로,¹⁰⁾ 합편을 완성한 뒤 표지를 바꾸었거나 ‘舊本’을 추가로 써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각 권의 첫 면에는 ‘與猶堂集卷之二十八/二十九/三十’, ‘洌水 丁鏞編’, ‘門人 李晴輯’, ‘尙書古訓四/五/六’이 기록되어 있는데, 권28과 29에는 사진 1과 같이 네 항목이 각각 다른 행에 기록되어 있으나 권30에만 사진 2와 같이 ‘門人 李晴輯’이 ‘尙書古訓六’과 같은 행에 소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두 필사본의 권수에는 6권 모두 가장본의 권30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최초의 성서成書 이후 책의 체제에 변동이 있었음을

화재단, 2019, 26쪽.

10) 규장각 소장 『尙書古訓』의 「序」에는 이정을 시켜 採綴한 내용과 여타 자료 및 자신의 견해를 첨가하여 엮은 책을 “名之曰『尙書古訓』”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과 『尙書知遠錄』을 합쳐서 만든 合本 『尙書古訓』에 이 책의 序를 轉載하면서는 제목을 ‘古訓蒐略序說’이라고 하여 書名을 바꾸어 표기하였다. 그러나 『尙書古訓知遠錄合編序說』의 본문에서는 “書雖兩合, 仍名之曰尙書古訓”이라고 하여 이전의 書名인 『尙書古訓』을 그대로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舊本’이란 合本 『尙書古訓』을 의식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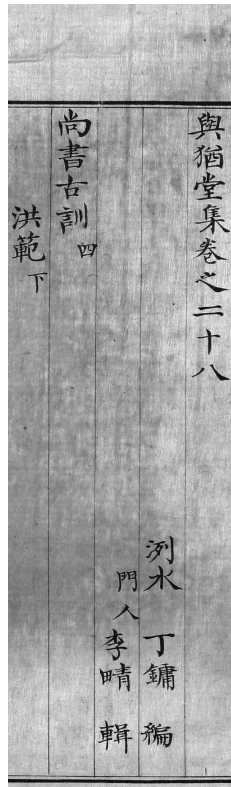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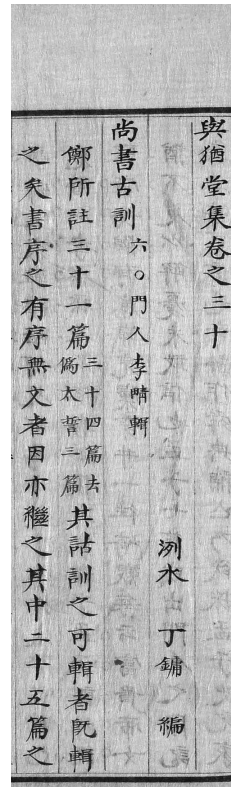


사진 2

의미한다.

각 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4: 洪範下, 金縢, 大誥, 康誥, 酒誥, 梓材, 召誥, 洛誥.

권5: 多士, 無逸, 君奭, 多方, 立政, 顧命, 康王之誥, 費誓, 呂刑,

文侯之命, 秦誓.

권6: 逸篇의 序, 書大傳零文(22조목), 逸書殘句(21조목).

본문에는 먼저 경문을 제시하고 바로 다음 행에 아무 표지 없이 고훈을 제시하고, ‘引證’ ‘考訂’을 두었다. ‘인증’은 『사기』 이외 다른 전적에 나오는 『상서』 인용구나 관련 기록을 채록한 것으로¹¹⁾ 합편에서는 ‘고증考證’으로 제목이 바뀌었고, ‘고정’은 채록한 고훈 중에서 시비是非를 변별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따로 뽑아서 자신의 견해를 붙인 것으로, 합편에서도 이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 괄외郭外의 두주頭註에 추가할 내용을 기록하고 본문 중 그 내용이 들어갈 위치를 붉은색으로 표시해 두었다. 각 항목의 기술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경문: 「대고」까지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만 쓰고 ‘至’로 줄임 표시를 하여 ‘六三德至高明有德’과 같이 제시하고, 권점圈點(○)을 붙인 다음 『사기』의 관련 기록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경문까지 모두 소자쌍행小字雙行으로 기록하고 극행極行에서 시작한다. 규장각본과 쓰쿠바대본은 경문을 모두 대자大字로 쓰고 ‘至’만 소자로 썼으며, 경문 다음에 권점 없이 『사기』의 내용을 소자쌍행으로 기록하였다. 그런데 「강고」의 제1장¹²⁾ “惟三月哉生魄”부터는 경문을 제시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㉑ 「대고」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된 부분도 있고, ㉒ 해당 장 전체를 기록하는 방식, ㉓ 경문의 일부를 제시한 다음 권점을 붙이고 다른 장의 경문을 이어서 기록하는 방식이 혼재하고 있다. 규장각본과 쓰쿠바대본(이하 ‘두 필사본’)에는 ㉒의 방식이 대부분 ㉑의 방식으로 기재되었고, ㉓의 경우는 경문의 첫 부분만 대자로 기록하고, 권점 이하의 경문은 소자쌍행으로 기록하고 있다. 예컨대 「강고」 1장의 경문이 가장본에는 “惟三月哉生魄, 周公初基……周公咸勤, 乃洪大誥治” 전체가 실려 있는데, 두 필

11) 『사기』에서 채록한 내용은 모두 경문의 끝에 소자쌍행으로 기록하였다.

12) 본고에서 말하는 『상서』 각 편의 장수는 합편 『상서고훈』의 分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상서정의』나 『서집전』의 분장과는 다를 수 있다.

사본에는 ㉔의 경우와 같이 “惟三月哉生魄〈至〉乃洪大誥治”로 줄여서 기록되어 있다. 또 「강고」 11·12장의 경문이 가장본에는 “殺越人于貨，譬不畏死，罔弗憝。○子弗祗服厥父事……”로 기록되어 있는데, 두 필사본에는 ‘子弗祗服厥父事’ 이하의 내용이 소자쌍행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가 여러 군데에 보인다.

② 고훈: 경문의 어휘를 대자大字로 쓰고 그에 대한 고훈을 소자쌍행으로 실었는데, 이 부분은 모두 극행에서 한 글자를 내려서 썼다.

③ ‘고정’과 ‘인증’: 표지는 대괄호()를 써서 구분하였다. 이 부분은 해당 전적의 원문을 대자로 쓰고, 그에 대한 주석 등 관련 내용은 소자쌍행으로 바로 아래에 붙여 썼는데, 행을 바꾸지 않고 앞에 권점을 써서 구분하였다.

④ 안설案說: 이상의 ‘고훈’, ‘고정’, ‘인증’에 기록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안설을 부기附記할 때에는 행을 바꾸지 않고 앞의 내용에 이어서 쓰되 ‘용안鑄案’이라는 표지를 붙이고 역시 앞에 권점을 써서 구분하였다.

⑤ 수정 사항: 본문에 추가할 내용이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밖외郭外에 두주頭註로 기록하고,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갈 위치를 본문 중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본문에 연자衍字가 있으면 붉은색으로 완전히 지워 놓았고, 내용 전체에 줄을 그어 삭제 표시를 한 부분도 있다.

이상 ②③④의 경우는 두 필사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⑤의 수정 사항 중 붉은색으로 완전히 지운 연자 역시 모두 빼고 필사되어 있다. 그러나 줄을 그어 삭제한 부분은 두 필사본에는 모두 삭제되지 않고 원래의 위치에 그대로 들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합편을 만들기 전까지 정약용은 구본을 계속 검토하여 내용을 추가 혹은 수정하였고, 합편을 만들 때까지 수정을 계속했음을 알 수 있다. 두 필사본 혹은 그 저본의 필

사는 최후의 수정이 가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2) 가장본과 두 필사본의 비교

이 책의 이본으로는 지금까지 ‘쓰쿠바대본’(청구기호 ㄱ815-26)과 ‘규장각본’(청구기호 ㄱ7016) 2종의 필사본이 보고되었는데, 이 가장본이 두 필사본의 원 저본底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본의 두주에 주필로 첨가한 내용이 두 필사본에 모두 지시한 위치에 본문으로 편입되어 있고, 주필로 지운 부분은 모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두 필사본의 관계에 대해 김문식은 쓰쿠바대본이 규장각본보다 먼저 필사되었다고 보고, 두 본의 “체제가 일치하고 권별 내용도 동일한” 점을 근거로 쓰쿠바대본이 규장각본의 저본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쓰쿠바대본의 삭제 혹은 추가 기록이 규장각본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쓰쿠바대본에 수정 표시가 없지만 규장각본에서 오류를 수정한 경우”가 있는 것을 근거로 “쓰쿠바대본이 규장각본의 저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규장각본의 저본에 해당하는 필사본을 후사後寫한 본으로 추정”하였다.¹³⁾ 그런데 가장본 두주의 추가 내용이 편입된 정황을 보면 오히려 규장각본이 더 앞선 본이거나 혹은 두 본은 각각 다른 본을 저본으로 전사轉寫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김문식은 쓰쿠바대본을 규장각본의 저본이라 하기 어려운 근거로 쓰쿠바대본의 첨삭 기록이 규장각본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¹⁴⁾와 쓰쿠바대본에 수정 표시가 없는데도 규장각본에서 수정한,

13) 김문식, 앞의 논문, 314-316쪽.

14) 권1 「요전」과 권2 「우공」의 경우를 사례로 제시하였으나, 가장본에는 권1, 2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 ① 권4, 金滕의 '序曰'을 한 칸 내려 씌움 → 극행極行에 기록하여 바로잡음.
- ② 권5, 多士를 한 칸 내려 씌움 → 극행에 기록하여 바로잡음.
- ③ 권5, 顧命 '序曰' 부분의 “務在節母多欲以篤信信臨之作顧命” → “務在節儉 母多欲 以篤信臨之 作顧命”으로 바로잡음.¹⁵⁾

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과 ②는 가장본에도 규장각각본과 같이 모두 극행에 기록되어 있고, ③ 역시 '務在節' 뒤에 규장각본과 같이 '儉'이 더 있다. 또 가장본에 '고정'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 규장각본에는 모두 '고정'으로 되어 있으나 쓰쿠바대본에는 '고증考證'으로 바뀌어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문식은 이를 “규장각본이 쓰쿠바대본의 오류를 수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가장본에는 '고증'이라는 용어가 전혀 보이지 않고 모두 '고정'으로 되어 있으며, 규장각본도 마찬가지이다. '고증'은 합편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구본 중에서는 쓰쿠바대본에만 '고증'이 「홍범」에 2, 「금등」에 2, 「장고」에 1, 「고명」에 1, 「여형」에 1, 모두 7사례가 보인다. 쓰쿠바대본의 필사 시기¹⁶⁾를 감안하면 합편을 만들기 전에 필사한 것을 저본으로 전사轉寫하면서 합편의 체제를 의식하여 변경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¹⁷⁾

이상의 내용을 보면 규장각본은 가장본을 저본으로 하였고, 쓰쿠바대

15) 김문식, 앞의 논문, 316쪽.

16) 쓰쿠바대본 첫째 면에 대정大正 11년(1923)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로 전사 시기가 기록되어 있다.

17) 실제로 구본의 '고정' 항목에 들어 있던 내용이 합편에서 '고증'으로 변경된 사례가 여럿 보인다. 쓰쿠바대본에서 '고증'으로 기록된 7사례 중 합편에도 '고증'으로 된 사례가 셋이고, '고정'에 들어 있는 것이 둘이며, 나머지 둘은 '고훈'과 '고변' 항목에 수록되어 있다.

본은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하였거나 다른 저본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가장본이 규장각본이나 쓰쿠바대본의 직접 저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우선 각 권의 구성이 다르다. 규장각본과 쓰쿠바대본은 “권4: 洪範, 金縢, 大誥, 康誥. 권5: 酒誥, 梓材, 召誥, 洛誥, 多士, 無逸, 君奭, 多方, 立政, 顧命, 康王之誥, 費誓. 권6: 呂刑, 文侯之命, 秦誓, 逸篇諸序.”로 되어 있다. 가장본과는 다르게 「홍범」을 상하로 나누지 않았고, 각 권에 들어간 편도 다르다. 또 가장본에는 두 필사본에 있는 ‘逸篇諸序’라는 제목이 없다. 또 가장본의 권말에는 두 필사본에 없는 ‘서대전영문書大傳零文’ 22조목과 ‘일서잔구逸書殘句’ 21조목이 더 있는데, 이 중 일부 내용은 합편에도 수록되어 있다.¹⁸⁾ 이 두 항목은 1차 필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한 것으로 보이며, 편 의 구성과도 연관이 있는 듯하다. 두 필사본의 권6에 들어 있는 「여형」, 「문후지명」, 「진서」 세 편이 가장본에는 권5에 들어 있는데, 사진 3과 같이 「여형」은 면의 첫 7행을 비워 둔 채 왼쪽 셋째 행부터 시작되고 있다. 두 필사본에는 「여형」이 권6의 첫 편으로 배치되어 면의 첫 행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처음에 없었던 ‘서대전영문’과 ‘일서잔구’ 항목을 추가하고 각 권의 내용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추정된다. ‘서대전영문’과 ‘일서잔구’를 본고의 말미에 첨부하였다.

이런 사실을 보면 두 필사본은 1810년에 만든 최초의 구본의 모습을

18) 예를 들면 ‘서대전영문書大傳零文’의 「多士傳」曰: “百里之國, 二十里之郊, 七十里之國, 九里之郊, 五十里之國, 三里之郊.”[王制]疏과 「多士傳」曰: “古者, 后夫人將侍君, 前息燭後舉燭, 至於房中, 釋朝服襲燕服, 然後入御於君. 鷄鳴, 太史奏鷄鳴於階下, 然後夫人鳴佩玉於房中告去.”[周禮]「內司服」及「詩」[小星]疏 두 조목은 합편 「상서서尙書序」의 「다사多士」 편에 그대로 실려 있다. (『정본』 11책, 102~103쪽) 또 「虞夏傳」曰: “舜入唐郊, 以丹朱爲尸.”[曲禮]「抱孫不抱子」疏 조목은 「고요모阜陶謨」 편에 「虞夏傳」을 ‘書大傳’으로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 수록하였다. (『정본』 11책, 269~2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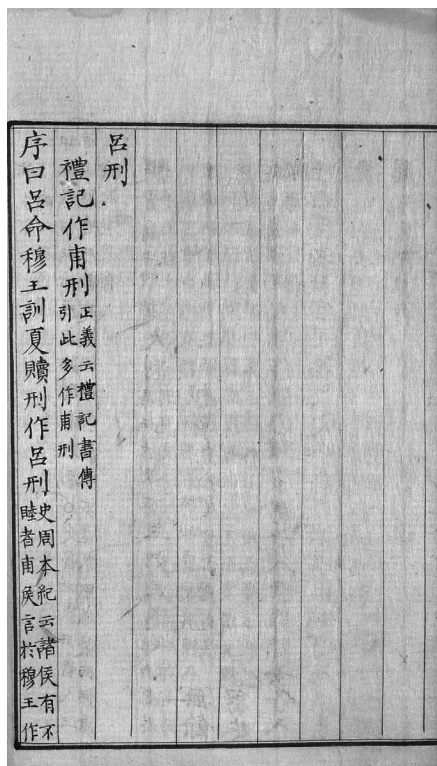


사진 3

유지했거나 그에 더 가까운 모습이고, 가장본은 이후에 수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장본과 합편의 관계

가장본의 추가·수정 내용을 보면 이 책은 정약용이 1834년 합편 『상서고훈』을 저술할 때 이용한 책인 듯하다. 가장본 구본의 첨삭 내용이 합편에 모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합편에는 구본에 없는 고훈을 추가하기도 하고,¹⁹⁾ ‘고정’이나 ‘인증’의 항목에 있던 것을 ‘고훈’이나 ‘고변’ 등 다른 항목으로 옮기기도 하였다. 또 구본과 달리 ‘고훈-고아-고증-고정-고변’으로 분석 틀을 다각화하였으며, 구본에는 본문으로 수록되어 있던 내용이 합편에서는 소주로 바뀌기도 하는 등 변동이 일어났지만, 가장본의 두주에 추가한 내용은 합편에 모두 반영되었고 삭제 기록도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다.

- ① 「금등」의 “曰休徵至恒寒若”의 ‘고훈’ 부분 두주 “狂〈正義云: “鄭以狂爲倨慢”〉”: “急〈鄭云: “急促自用也.”〉 앞에 삽입 지시→합편 “鄭云: “狂, 倨慢.〈正義云〉急, 急促, 自用也.”
- ② 「금등」 “既克商至王季文王”의 ‘고훈’ 부분 두주 “說文弗豫作不愆”: “○釋文, 豫或作杼” 앞에 삽입 지시→합편 경문 끝의 소주 “○釋文, 豫或作杼 ○說文, 弗豫爲不愆.”
- ③ 「강고」의 “惟三月哉生魄” 부분 ‘고훈’ 뒤에 “考訂 書大傳云: 攝政四年, …… 七年制禮作樂.” ○又云: “周公將制禮作樂…… 周公曰, …… 而況導之以禮樂乎?〈明堂位疏〉” 추가 지시→합편 “考證 書大傳云: 攝政四年, …… 七年制禮作樂. (별행) 周公將制禮作樂…… 周公曰: “……而況導之以禮樂乎?〈見〈明堂位〉疏〉”
- ④ 「입정」의 “序曰” 부분 “鋪案, 孔疏云…… 立庭之序本無起語, 以蒙周官之序. 必移之在上者……”의 두주: “必移之在上” 앞에 “今移之在上, 猶無起語, 天下有此序乎? 梅氏之”를 추가→합편 “鋪案, 序無起

19) 합편의 「상서고훈범례尙書古訓凡例」(『정본』 제11책, 30쪽)에 “지금 기왕 합편하는 터에 또 근세 유자의 설 가운데 채록할 만한 것이 있으면 수록하지 않을 수 없었다.”(今既合編, 又或近世儒說有可采錄者, 不免濫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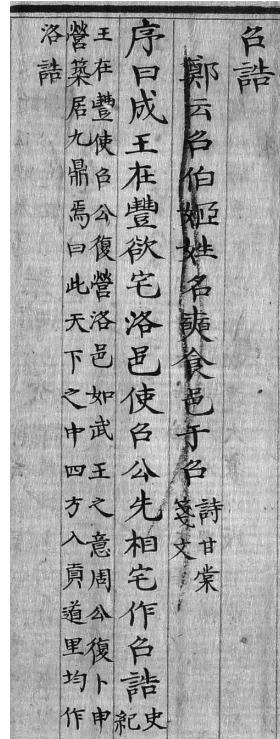


사진 4

語者, 蒙上周官之序, 如魯世家之文也. 今既移之在上, 猶無起語, 何以爲序?

이 ①부터 ④까지의 수정 내용은 규장각본과 쓰쿠바대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본에서는 두 본에 반영되지 않은 수정 내용도 확인된다. 사진 4와 같이 해당 부분 전체에 선을 그어 삭제하도록 표시된 부분이 여럿 있는데, 그 내용들이 합편에는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두 필사본에는 이 삭제 지시가 반영되지 않고 원래의 위치에 그대로 들어 있다. 따라서 이 수정은 합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산은 구본 『상서고훈』을 처음 완성한 뒤에도 계속해서 수정 가필을 하였다. 이 단계에서 필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규장각본과 쓰쿠바대본의 저본이 되었으며, 그 뒤 합편을 만들면서 다시 한 번 수정을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1차 수정을 가한 뒤 합편을 만들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 필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규장각본과 쓰쿠바대본의 저본이 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3. 『상서지원록』 4권 2책

다산은 「상서지원록서설尙書知遠錄序說」에서 “『상서』의 가르침은 먼 옛날의 일을 알게 하는 것이다. 자구字句를 훈고하는 것은 원고遠古 제왕의 사적을 알기 위해서”라고 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에 시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²⁰⁾ 이것은 서명을 『상서지원록』이라고 한 이유를 설명한 것임과 동시에 다산의 『상서』 연구가 경세經世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끝에 “신미년 봄, 다산 적소에서. 이때 이미 사면되었으나 돌아가지 못하였다.”[辛未春, 在茶山謫中, 時既赦而未還.]라고 하여 저술 시기를 밝혀 놓았다.²¹⁾

이 책은 1834년 조목조목 나누어 구본에 붙여넣어 합편 『상서고훈』으

20) “書粗成, 名之曰《尙書知遠錄》。其謂之知遠者, 何? 《書》之爲教, 知遠而已。【見「經解」】詰字訓句, 歸知遠古帝王之事而已。知之奈何? 將以施諸今也。” 이것은 합편 『상서고훈』에 실린 「尙書知遠錄序說」(『정본』 제11책, 27쪽)의 내용으로, 『여유당전서보유본』의 「서」에는 소주의 ‘見「經解」’라는 세 글자가 없다.

21) 『여유당전서보유본』의 「서」에는 ‘辛未春, 在茶山謫中, 時既赦而未還’이 없다. 이로 보아 합편 『상서고훈』에 「서」를 옮겨 오면서 성서成書 시기를 추술追述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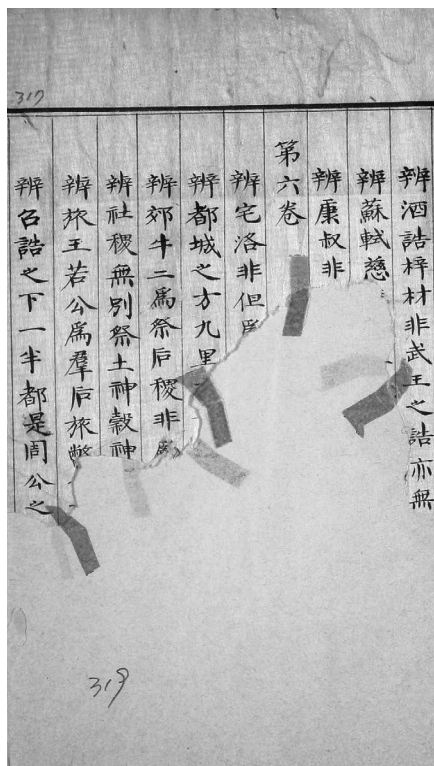


사진 5

로 개수改修되었다. 결과적으로 구본 『상서고훈』과 함께 이 책은 합편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가장본은 7권 3책 중 권1, 2, 3이 없고 권4~7의 4권과 「상서지원록목차괄의」가 2책으로 묶여 있다.

표지에는 오른쪽에 ‘尙書知遠錄’이라는 책제와 왼쪽에 ‘菜花亭集’이라는 집별 명칭이 쓰여 있고, 각 권의 권수卷首에는 ‘興猶堂集’으로 되어 있다. 채화정은 다산이 1821년 5월 5일에 지은 정자이므로²²⁾ 이 책의 장

22) 조성을, 『年譜로 본 茶山 丁若鏞』, 지식산업사, 2016, 742쪽.

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산 저작 목록 중 『채화정집』이라는 제목은 거의 없다. 김보름이 정리한 가장본의 목록에도 『매씨상서평梅氏尙書平』과 이 『상서지원록』 두 책만 『채화정집』으로 되어 있다.²³⁾ 규장각본과 버클리대본의 표지에는 집별 명칭이 ‘侯菴經集’으로 되어 있다. 보유본도 ‘菜花亭集’으로 되어 있는데, 영인 당시까지는 소장처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화정집菜花亭集’이라는 집별 제목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⁴⁾ 하지만 보유본은 두주의 몇 군데 탈자를 제외하면 가장본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사진5에서 보듯 권말 「상서지원록목차괄의」 부분의 책장이 찢긴 자국과 찢긴 면수 및 찢긴 부분의 테이프 자국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가장본이 보유본의 원본임은 의심할 수 없다. 보유본에는 두주의 ‘下壬一’이 ‘下壬’으로, ‘下子一’이 ‘下子’로, ‘下辰九’가 ‘下辰’으로 되어 있고, ‘下寅一’의 ‘下’ 자는 오른쪽 절반이 지워져 있는데, 이는 인쇄 과정의 단순 실수로 보인다. 가장본에는 이 글자들이 모두 선명하게 적혀 있다.

이상 세 본의 선후에 대해 장동우는 보유본이 정고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서 규장각본보다 선행본임을 논증하였고,²⁵⁾ 김문식은 버클리대본은 보유본을 수정한 본이고, 규장각본은 버클리대본을 저본으

23) 김보름, 「정약용 저작집의 형성과 전승」, 한국한중양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55~57쪽.

24) 노경희, 「다산茶山 저술 ‘고본稿本’의 성격과 자료 전승 현황」, 『다산학』 17호, 2010. “첫 번째 자료는 『여유당전서보유』(경인문화사, 1969) 제5책에 영인된 것으로, 현재 그 소장처가 알려져 있지 않다.(개인 소장으로 추정됨) 『보유』의 해제에 따르면, 이 자료는 『菜花亭集』의 일부로 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영인된 자료만으로는 왜 그렇게 판단하였는지 알 수 없기에, 향후 소장자의 자료 공개를 통해 실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5) 장동우, 「『여유당전서』 정본사업을 위한 필사본 연구」, 『다산학』 7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5, 175쪽

로 한 전사본轉寫本임을 논증하였다.²⁶⁾

특히 김문식은 버클리대본에 나타나는 두주의 반영 여부를 근거로 『상서지원록』의 수정이 1) 처음 필사본이 완성된 단계, 2) 정약용이 버클리대본에 반영된 수정을 한 단계, 3) 정약용이 버클리대본에 반영되지 않은 수정을 한 단계, 4) 외손자 윤정기가 수정한 단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났을 것으로 세분하였다. 특히 하임육下壬六에 있는 ‘仲氏云’과 하사오下巳五의 ‘知遠錄所言 未及考白虎通也’는 정약용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버클리대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수정 단계는 더 세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²⁷⁾

필자는 이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仲氏云’의 내용은 합편 『상서고훈』에 수록되었고, 그 밖에도 버클리대본에 반영되지 않은 수정이 합편에 부분적으로 반영된 경우가 확인된다.²⁸⁾ 이것으로 보면 위 3) 단계의 수정은 구본과 『상서지원록』을 합편하던 때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합편과 『상서지원록』을 더 정밀하게 대조해 보아야 알 수 있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가장본 『상서지원록』에 대한 검토는 김문식의 앞의 논문에서 이를 영인한 보유본을 통한 연구에서 이미 자세히 이루어졌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26) 김문식, 『『상서지원록』 필사본의 원문 비교』, 『다산 필사본 연구』, 다산학술문화재단, 2019, 350-351쪽.

27) 김문식, 앞의 논문, 366쪽.

28) 예컨대 버클리대본의 下丁三(流有五刑)에 “流有五刑者 孔安國云 以流放之法 寬五刑也 有者寬也 鄭玄云 三有一曰弗識 二曰過失 三曰遺忘也.”라는 두주가 있다. 이 가운데 ‘孔安國云’은 구본 『상서고훈』에 없는 내용인데 합편에는 “梅云: ‘以流放之法寬五刑.’”으로 포함되어 있다. 다산은 『상서정의』의 공안국 傳은 모두 매색의 위작이라고 보고 합편 『상서고훈』에서는 “梅云”으로 인용하였다.

4. 『상서고훈』(합편) 3권 1책

1) 표제表題와 권수卷首

다산이 73세 생일이 되기 7일 전에 완성한 책으로, 『상서지원록』을 조목별로 나누어 『상서고훈』(구본)에 붙여 넣어 합치고 새로운 설을 덧붙여 한 책으로 만들어 제목을 『상서고훈』이라고 하였다. 두 책을 합쳤는데도 제목을 그대로 쓴 것은 여전히 고훈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이다.²⁹⁾ 이전의 저술이 제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이 책은 자신이 직접 “모으고 편집하며 또 손수 필사하여 2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128일” 만에 모두 7책 21권으로 완성하였다.³⁰⁾ 지금까지 신조선사본 외에 다른 본이 없었고, 이 가장본이 유일한 고본稿本이다.

다산 저술의 필사본에는 대부분 표제表題와 권수卷首題에 집별 명칭과 서명書名이 있는데³¹⁾ 이 책에는 표제에 집별 명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명도 없고, 각 권의 권수에만 ‘與猶堂集’이라는 집별 명칭과 서명을 썼을 뿐이다. 처음부터 표제를 쓰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앞부분 적어도 1책의 표지에는 제목을 썼을 수도 있으나, 남아 있는 것이 마지막 7책뿐이므로 확인할 수는 없다.

29) 「尙書古訓知遠錄合編序說」(『정본』 제11책, 28쪽). “乃取《知遠》之錄，條條摭裂，附入于『古訓』之編，合爲一部。……書雖兩合，仍名之曰『尙書古訓』，蓋新說雖附，猶以古訓爲主也。”

30) 『尙書古訓』, 「跋」(『정본』 제12책, 350쪽). “右『尙書古訓』二十一卷，余所輯，余所編，又余之手鈔者也。起工于二月二日，告竣于六月十日，其間一百二十八日。始不自意，賴天之佑，今幸卒業于未死，幸矣哉。余齡七十三，後七日，六月既望，余弧辰也。幸而至是，當以是七冊自壽之。”

31) 다산 저술 필사본의 표제에는 洙水全書續集, 與猶堂集, 與猶堂集雜文, 俟菴經集, 俟菴別集, 俟菴雜纂, 菜花亭集 등의 집별 명칭이 붙어 있고, 권수제에는 與猶堂集이 사용되었다. 김보름, 「“여유당집”의 성립에 관한 고찰」, 『다산학』 18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1, 200~201쪽.

각 권의 권수에는 첫 행에 ‘尙書古訓卷之十九/二十/二十一’, 둘째 행에 ‘洌水 丁鏞 輯’, 셋째 행에 편의 제목이 쓰여 있다. 본문은 단정한 해서체로 작성되었는데, 『상서고훈』은 다산 자신이 손수 필사하였다고 한 만큼 다산의 친필일 것으로 판단된다. 7책 21권 중 권19, 20, 21과 발跋이 들어 있는 7책만 남아 있다.

2) 본문의 구성과 각 권의 내용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편의 제목과 경문은 두꺼운 필체로 극행에서 시작한다. 편제와 경문의 글자 이형태異形態를 제시할 때에는 같은 행의 바로 아래에 붙여서 소자쌍행으로 썼다.

② 경문 바로 다음 행에는 고훈이 배치되는데 경문보다 가는 필체로 한 자를 내려서 썼다.

③ 고훈이 끝나면 ‘고이’ ‘고정’ 등의 항목을 별행別行하고 극행에서 한 자를 내려서 기재하는데, 분류표지에는 아래위에 가는 선을 그어 구분하였다. 분류표지는 ‘고이’, ‘고증’, ‘고정’, ‘고변’의 네 종류가 있다.³²⁾

④ 고훈과 각 분류 항목에서 제시한 내용에 안설을 부기附記할 때에는 행을 바꾸지 않고 앞의 내용에 이어서 쓰되 ‘鏞案’ 등의 안설 표지를 붙이고 앞에 권점을 두어 구분하였다.³³⁾

32) 「범례」에 “의지가 틀린 것을 고오라고 표시한다.”(義旨誤者, 標曰考誤.)라고 하고, “글의 내용에 따라 그 뜻을 부연한 것으로 경의 본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연의라고 표시한다.”(因文生義, 不關經旨者, 標曰衍義.)라고 하였으나, ‘고오’는 단 두 차례 「상서서」와 「우공」 편에만 나오고, ‘연의’는 『상서고훈』은 물론이고 다산의 다른 경학 저술에서도 用例가 발견되지 않는다.(『정본』 제11책, 30쪽)

33) 『상서고훈』에는 鏞案, 案(按), 辨曰, 訂曰, 議曰, 論曰, 駁曰 등 모두 7종류의 안설 표지가 사용되었다.

이상의 기본 구성은 구본의 체제와 일치하는데, 구본에서 ‘인증引證’과 ‘고정考訂’ 두 종류뿐이던 분류표지가 모두 네 종류로 늘어났다. 다산의 상서학이 보다 정밀해지고 성숙해진 증거일 것이다.

각 권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19: 多方, 立政.

권20: 顧命, 康王之誥, 費誓.

권21: 呂刑, 文侯之命, 秦誓

跋

이 책은 신조선사본의 저본이 되었는데, 남아 있는 것은 신조선사본의 권6 후반부와 권7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신조선사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尙書古訓序例: 古訓蒐略序說, 尙書知遠錄序說, 尙書古訓知遠錄序說,

尙書古訓序說, 尙書序

권1: 堯典

권2: 堯典,³⁴⁾ 皋陶謨

권3: 禹貢, 甘誓

권4: 湯誓, 盤庚 上·中·下, 高宗彤日, 西伯戡黎, 微子, 牧誓, 洪範, 金縢

권5: 大誥, 康誥, 酒誥, 梓材, 召誥

권6: 洛誥, 多士, 無逸, 君奭, 多方, 立政

권7: 顧命, 康王之誥, 費誓, 呂刑, 文侯之命, 秦誓.

跋

34) 신조선사본에는 「요전」을 권1과 권2에 나누어 실었을 뿐 ‘上·下’로 구분하지는 않았는데, 정본 『상서고훈』에서는 ‘요전’ 다음에 ‘上·下’자를 붙여서 구분하였다.

임재완은 정본 『상서고훈』의 「해제」에서 “『상서고훈』은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 제2집 제22~28권(총7권)에 수록되어 있다. 필사본 21권이 활자본으로 바뀌면서 권수가 줄어든 것인지, 7책이 7권이 된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7책이 7권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하였다.³⁵⁾ 가장본을 참고하면 7책이 7권으로 바뀐 듯하지만 가장본 7책에 있는 권19의 「다방」과 「입정」이 신조선사본에서는 권6으로 옮겨진 것을 보면 7책의 체제를 충실히 따랐다고 하기도 어렵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입정」은 “주공周公의 절필絶筆”로 서³⁶⁾ 주공이 작성한 것이고, 「고명」부터는 주공 사후의 일이므로 내용상 구분은 된다.

3) 가필加筆 내용의 검토

가장본 『상서고훈』에는 두주에 가필加筆한 내용이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본문과 같은 단정한 해서체로 작성된 두주가 있는데, 고훈을 추가하거나 누락된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이는 모두 검은색으로 쓰고, 본문 중에 해당 내용이 들어갈 위치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본문에 추가할 것과 소주에 추가할 것을 부호를 달리하여 구분해 놓았다. 모두 17조목이 있는데, 고훈을 추가한 것이 6조목, 단순 실수에 해당하는 탈자를 보충한 것이 4조목, 소주를 보충한 것이 4조목, 본문의 내용 일부를 추가한 것이 1조목, ‘고증’과 ‘고정’의 항목을 추가한 것이 각각 1조목이다.

35) 『정본』 제11책, 9쪽.

36) 『정본』 제12책, 280쪽. “且是周公之絶筆, 誠人主之寶箴也.”

이밖에 「비서」 마지막 5장의 끝에 “「考證」『左傳』……”의 한 조목이 있는데, 상단에 붉은색 해서체로 쓴 ‘當在上’이라는 두주가 있다. 이는 해당 내용을 앞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표시인데, 해당 내용이 옮겨가야 할 위치인 4장의 마지막 부분과 5장의 경문 사이에 붉은색으로 ‘考證’이라 쓰고 상단에 역시 붉은색으로 ‘見下’라고 적혀 있다.

이상은 본문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등 수정을 가한 것으로, 정약용이 직접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주의 수정 보충 내용은 신조선사본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신조선사본은 이 책이나, 이 책의 필사본을 저본으로 하였음이 확실하다.³⁷⁾

이 밖에 본문의 수정과는 관련이 없이 짧은 평어評語를 행서체로 적어 놓은 두주가 있다. 여기에는 ‘確’ ‘精’ 한 글자로 된 것과 짧은 메모 형식으로 감상을 적어 놓은 것이 있다. 모두 그 아래 본문에 관주를 달거나 비점을 찍어 놓았다.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確’은 그 부분의 내용이 ‘확실하다’, ‘精’은 ‘정밀한 해석’이라는 뜻일 것으로 추정된다. ‘確’ 자가 모두 네 번, ‘精’ 자가 두 번 보인다. 또 「다방」 8장의 ‘고정’ 부분 두주에 ‘校’라고 써 있는데 내용 교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듯하다.³⁸⁾

짧은 문장으로 된 평어들은 多方有觀望之罪(「다방」 14장 ‘探天之威, 我則致天之罰’의 고훈), 爾者太史(『입정』 14장 ‘司寇蘇公, 式敬爾由獄’의 고훈)³⁹⁾과

37) 신조선사본을 간행하기 전 1925년 장마에 한강이 불어나 다산의 구택舊宅이 떠내려가고 집안에 간직하고 있던 저서도 잠길 뻔하였는데, 그 이듬해인 1926년에 어떤 이가 간행할 계획으로 이미 옮겨 적었다고 한다. 정인보, 『『여유당전서』總序』, 연세국학총서 67, 『舊園文錄中』, 태학사, 2006, 215쪽.

38) ‘校’ 자 아래 본문의 ‘一百六十六’에 청색 관주가 있는데, 해당 부분의 『상서』 경문은 모두 167자이다.

39) 이것은 경문의 해당 구절에 대한 다산 자신의 주석인 “蘇公畏此簡書, 愼其刑獄, 故呼太史而告之曰‘蘇公式敬爾由獄’.”을 말한다.

같이 채록한 고훈을 부연 설명한 것이 있고, 洞然(『다방』 8장. ‘須暇之子孫’의 고훈), 梅義正(『입정』 2장 ‘惟有夏乃有室大競’의 고훈), 蔡注明確(『여형』 9장 ‘非終惟終在人’의 고훈)과 같이 고훈을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의 평어들은 붉은색으로 쓴 것과 청색으로 쓴 것이 있는데, 글자의 색깔에 따라 내용을 구분할 만한 특징은 없다. 이는 서로 다른 시기에 작성된, 다시 말해 두 차례 이상의 검토가 있었던 증거이거나 다산 사후 후손들이 적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신조선사본·정본과의 대조

이 책은 신조선사본의 저본이 되었음이 거의 확실한데, 신조선사본은 간행 직후부터 오탈자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최익한은 1938년 12월 9일부터 1939년 6월 4일까지 동아일보에 「여유당전서를 독함」이라는 글을 기고하였는데, 그 중 ‘K형에게’라는 글에서 “간행 전서를 언뜻 읽어보니 족하의 감사 글과 같이 사력事力の 군속窘束과 교열 제공諸公의 불의적 사고로 인하여 잘못된 글자와 그릇된 글귀誤字訛書가 없지 않은 것은 정오표의 첨부로써 문제는 해결될 줄 압니다.”⁴⁰⁾라고 하였다. 그러나 신조선사나 다른 곳에서 지금까지 정오표가 만들어졌다는 보고는 없다. 특히 『상서고훈』은 신조선사본 외에 다른 본이 없었으므로 어떤 오자·와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신조선사본과 정본을 가장 본과 대조한 결과 50여 군데의 이동이 발견되었다.

다음에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40) 최익한, 「선생 저서 총목總目」, 『여유당전서를 독함』, 서해문집, 2016, 90쪽.

표 : 가장본, 신조선사본, 정본의 비교

번호	편명과 정본 쪽수	가장본	신조선사본	정본	비고
1	다방 254	若以四方諸侯日之爲 殷侯	告以四方諸侯日之爲 殷侯	告以四方諸侯日之爲 殷侯	신: 오류 정: 답습
2	256	言賦役煩重	言賦使煩重	言賦使煩重	신: 오류 정: 답습
3	256	“剗刳榘斲……	“剗刳榘斲……	剗刳榘斲……	신: 오류 정: 답습
4	258	天惟五年	天維五年	天惟五年	신: 오류 정: 對校
5	260	以虎狼之搏噬	以虎狼之博噬	以虎狼之博噬	신: 오류 정: 답습
6	261	以自裕之	以自裕	以自裕	신: 오류 정: 답습
7	262	徙殷民于洛邑	徙民于洛邑	徙民于洛邑	신: 오류 정: 답습
8	262	今年王卽位之八年	今年王位之八年,	今年王位之八年	신: 오류 정: 답습
9	263	非如邊戍及瓜	非如邊戍及瓜	非如邊戍及瓜	신: 오류 정: 답습
10	263	爾乃自時洛邑, 尙亦 力畋爾田,	爾乃自時洛邑, 尙亦 力畋爾田,	爾乃自時洛邑, 尙永 力畋爾田,	가: 오류 신: 답습 정: 대교
11	입정 268	毋忝高位	每忝高位	每忝高位	신: 오류 정: 답습
12	272	司徒·司馬·司空以下	司徒·司馬·司空以下	司徒·司馬·司空以下	신: 오류 정: 이교
13	272	及阪地之尹長, 皆用 賢	及阪地尹之長, 皆用 賢	及阪地尹之長, 皆用 賢	신: 오류 정: 답습
14	273	阪·尹, 二地名	阪·尹, 二地召	阪·尹, 二地召	신: 오류 정: 이교
15	276	“石經云, ‘予旦以前 人之微言。’”	“石經云, ‘予旦以前 人之微言。’”	“石經云, ‘予旦以前 人之微言。’”	정: 대교
16	고명 282	王乃洮潁水	王乃洮潁水	王乃洮潁水	신: 오류 정: 대교
17	282	潁, 潁面也	潁, 潁面也	潁, 潁面也	신: 오류 정: 답습

18	283	古文作頤	古文作頤	古文作頤	산: 오류 정: 대교
19	284	爾尙時朕言	爾尙時朕言	爾尙明時朕言	가: 오류 산: 답습 정: 대교
20	284	莫麗	莫麗	莫麗	산: 오류 정: 답습
21	284	莫麗陳敎	莫麗陳敎	尊麗陳敎	정: 오류
22	285	寢門外	寢門外	寢門外	산: 오류 정: 답습
23	286	禮云	禮云	禮記云	정: 대교
24	287	鄭王亦以爲然	鄭王亦以爲然	鄭王亦以爲然	정: 이교
25	291	大弓名	大弓召	大弓召	산: 오류 정: 이교
26	291	故鼎反乎曆室	故鼎反乎曆室	故鼎反乎曆室	산: 오류 정: 답습
27	292	鄭云	鄭矣	鄭矣	산: 오류 정: 이교
28	292	卽今之句子戟	卽今之句子戟	卽今之句子戟	정: 대교
29	293	太保·太史·太宗	太保·太史·太宗	太保·太史·太宗	산: 오류 정: 대교
30	294	子,嗣王	子,嗣玉	子,嗣玉	산: 오류 정: 이교
31	297	秉璋以酢。報祭也	秉璋以酢。報祭也	秉璋以酢。酢,報祭也,	가: 오류 산: 답습 정: 대교
32	298	餼禮乘壺酒者	餼禮乘壺酒者	禮記乘壺酒者	가: 오류 산: 답습 정: 대교
33	강왕지고 301	薛本,作康王之算	薛本,作康王之异	薛本,作康王之异	산: 오류 정: 답습
34	비서 309	我商賚汝	我商賚汝	我商賚爾	가: 오류 산: 답습 정: 대교
35	309	甲戌	甲戌	甲戌	가: 오류 산: 수정 정: 이교
36	여형 313	明子孫改封爲甫侯	明子孫改封爲甫侯	明子孫改封爲	정: 오류

37	315	白狼·白鹿	自狼·白鹿	自狼·白鹿	신: 오류 장: 이교
38	318	穆王何爲而首舉之	穆王何爲以首舉之	穆王何爲以首舉之	신: 오류 장: 답습
39	320	去陰刑也	去除刑也	去除刑也	신: 오류 장: 답습
40	321	堯興又誅之	堯興又誅之	堯興又誅之	신: 오류 장: 답습
41	322	是謂絕地天通	是謂絕地天道	是謂絕地天道	신: 오류 장: 답습
42	323-4	韋昭狼是不分曉人	昭韋狼是不分曉人	韋昭狼是不分曉人	신: 오류 장: 이교
43	324	主山川以裕民	主山川以裕民	主山用以裕民	장: 오류
44	325	配食於上帝	祀食於上帝	祀食於上帝	신: 오류 장: 답습
45	329	皆與五辭相孚	皆與五辭相孚	皆與王辭相孚	장: 오류
46	329	周禮·大司寇	司禮·大司寇	周禮·大司寇	신: 오류 장: 이교
47	329	以三刺斷獄訟	以三刺斷獄訟	以三刺斷獄訟	신: 오류 장: 답습
48	329	○王制云	王制云	王制云	신: 오류 장: 답습
49	330	劓辟疑赦	劓罰疑赦	劓罰疑赦	가: 오류 신: 답습 장: 대교
50	337	非從喻從	非從喻從	非從惟從	가: 오류 신: 답습 장: 대교
51	문후지명 341	曰父義和	曰父義和	曰父義和	가: 오류 신: 답습 장: 이교
52	341	汝克紹乃顯祖	汝克紹乃顯祖	汝克昭乃顯祖	가: 오류 신: 답습 장: 대교
53	진서 345	如世稱嵯然	如世稱嵯然	如世稱嵯然	신: 오류 장: 답습
54	347	聲入心通	聲入心通	聲人心通	장: 오류
55	347	又從[耳/王], 與聽旁 [耳/王]同	又從聽, 與聽旁聽同	又從聽, 與聽旁聽同	신: 오류 장: 답습

56	347	冒爲媚	肩爲媚	肩爲媚	신: 오류 정: 답습
57	349	求丕豹·公孫技於晉	求丕豹·公孫技於晉	求丕豹·公孫技於晉	신: 오류 정: 답습

① 가장본 자체의 오류, ② 신조선사본의 오류, ③ 정본의 오류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①과 ②의 오류는 정본에서 교감을 통해 일부 바로잡았다.

① 가장본의 오류: 모두 12건인데, 11건은 신조선사본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정본에서 교감하였다. 신조선사본에서 옳게 수정한 것을 정본에서 잘못 입력하고 교감한 경우가 1건(표의 35번)인데, 정본의 교감 방식 역시 부적절한 듯하다. 정본의 교감 규정에 “저본의 오류가 명백하고 대교본이 옳다고 판단되면 대교본에 따라 바로잡는다.”라고 하였다. 해당 내용은 경문이므로 글자를 바로잡고 교감 근거만 제시하면 되는데, 잘못된 글자를 그냥 두고 “戊: 문맥상 ‘戊’이 옳은 듯하다.”라고 이교理校의 교감주로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23번의 경우 ‘禮記’를 ‘禮’로만 쓰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표기 방식으로 굳이 교감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28번은 대교를 하고 글자를 바로잡았으나 대교 자료로 『옥해玉海』를 쓴 것은 재고해야 한다. 해당 부분은 『상서정의』에서 인용한 내용이므로 『상서정의』 정리본을 대교 자료로 쓰는 편이 적절할 듯하다.⁴¹⁾

② 정본의 오류: 가장본과 신조선사본에 옳게 되어 있는데 정본에서 발생한 오류가 7건이다. 그중 표의 15번 경우는 ‘고이’의 내용으로,

41) 1999년 북경대출판사에서 간행한 표점본 『상서정의』와 2007년 상해고적출판사에서 간행한 『상서정의』에는 모두 ‘句孑戟’으로 되어 있고, 북경대본에는 “‘孑’字, 原作‘子’. 按阮校: 宋板‘子’作‘孑’. 按諸本作‘子’, 形近之誤.”라는 교감기가 있다.

경문의 글자가 석경石經에는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한 『한예문지고증漢藝文志考證』의 글을 인용한 것인데, 『석경고石經考』를 근거로 대교하여 오히려 틀리게 되었다. 이 경우는 대교 자료로 『한예문지고증』이나 석경 자체를 써야 하고, 『석경고』는 대교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이는 ‘고이’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듯하다. 24번의 경우 ‘鄭王’은 정현鄭玄과 왕숙王肅을 지칭하는데, 이는 『상서정의』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 ‘王’을 ‘注’로 잘못 교감하였다.

③ 신조선사본의 오류: 모두 38건인데, 그중 12건은 정본에서 교감하였고, 나머지 26건은 신조선사본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표 4번의 경우 ‘惟’와 ‘唯’는 흔히 통용해 쓰는 글자로서 굳이 오류라고 할 것은 아니다. 또 27번의 경우 “韋昭: 新朝本에는 ‘昭韋’로 되어 있으나 人名이므로 바로잡는다.”라는 교감주가 있는데, 인명이므로 이교를 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주자전서』에 나오는 것으로 전거가 있는 만큼 대교를 하는 편이 더 적절할 듯하다. 27번과 51번은 잘못된 글자를 그대로 두고 이교의 교감주를 두었는데, 27번은 『상서정의』에서 인용한 고훈이고, 51번은 경문이므로 모두 대교를 하고 글자를 바로잡는 것이 옳다. 또 55번의 경우 두껍게 표시한 두 개의 ‘聽’자는 그 글자의 좌측 부수部首(耳)만을 써야 하는데, 글자 전체를 쓴 것은 해당 부수의 글자가 활자나 입력 프로그램의 한자목록에 없어서 빚어진 오류이지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상의 이동은 앞으로 정본을 수정할 기회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으로 가장본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책의 이본들을 대조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구본 『상서고훈』은 1810년 성서成書 이후 합편을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검토 수정되었고, 일부 면은 전면 수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 합편을 만든 뒤에 장정을 새롭게 했거나 표지에 ‘舊本’이라는 글자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약용이 직접 썼을 수도 있으나 후손들이 썼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규장각본과 쓰쿠바대본은 후자의 전면 수정이 일어나기 전에 필사된 것이다. 가장본이 규장각본과 쓰쿠바대본의 원 저본임이 확실하나 두 필사본이 동일본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셋째, 두 본이 필사된 이후에도 수정은 계속되었는데, 일부의 수정은 합편을 작성하던 즈음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본에 추가된 내용이 두 필사본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합편에는 일부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 따라서 가장본은 정약용이 합편 『상서고훈』을 작성할 때 직접 사용한 본으로 추정된다.

넷째, 가장본 『상서지원록』은 영인 출간된 여유당전서보유본의 저본임이 확실하다.

다섯째, 표제와 권수제의 집별 제목이 다르게 되어 있고 표제에 ‘菜花亭集’이라는 집별 제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은 채화정을 완성한 1821년 5월 5일 이후 새로 장정을 새로 한 것이다.

다섯째, 『상서지원록』은 여러 차례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버클리대본에 반영되지 않은 수정이 합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버클리대본에 반영되지 않은 두주의 추가 내용이 합편

에 반영된 사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여섯째, 합편 『상서고훈』은 신조선사본의 저본이고, 정본 『여유당전서』의 원 저본이다.

일곱째, 두주의 기록 중 본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지시한 두주는 정약용이 직접 쓴 것이고, 기타의 두주는 제자나 후손들이 기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향후 필적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여덟째, 이상의 사실 외에 정본 『상서고훈』과 가장본을 대조하여 정본의 오탈자와 교감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 부분은 향후 정본 수정 기회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과제이다.

또 구본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을 합편 『상서고훈』과 정밀히 대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본의 권말에 추가된 ‘서대전영문書大傳零文’과 ‘일서잔구逸書殘句’의 내용이 합편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대조한다면 정약용이 선유先儒의 『상서』 주석을 취사한 기준을 알아보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논문투고일 2021년 9월 16일, 심사확정일 2021년 9월 17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8일)

〈첨부자료〉

■ 書大傳零文

■와・부호 및 “(下一字)”는 필자가 첨가함.

(下一字)窮微絕無書籍, 凡經史注疏所引書大傳之文, 逐篇採錄, 其不可詳者, 姑錄下方, 以俟來日.

- 大傳云: “多聞而齊給.” 〈鄭云: “齊, 疾也.” ○見黃帝本紀. 幼而徇齊節〉
- 唐傳曰: “堯時, 麒麟在郊藪.” 〈見麟趾疏〉
- 唐傳曰: “古之帝王必有命, 民於其君得命, 然後得乘飾車駢馬衣文駢錦.” 〈周禮巾車疏〉
- 大傳曰: “舜耕歷山, 〈鄭云: “在河東.”〉 漁雷澤, 〈鄭云: “雷, 夏兗州澤, 今屬濟陰.”〉 販於頓丘, 就時負夏.” 〈鄭云: “負夏, 衛地.” ○見舜本紀〉
- 虞傳曰: “東岳陽伯之樂舞株離.” 〈注云: “株離, 舞曲名, 言象物生株離也.”〉
- 虞夏傳曰: “舜入唐郊, 以丹朱爲尸.” 〈曲禮‘抱孫不抱子’疏〉
- 虞夏傳曰: “納以教成.” 〈鄭云: “謂薦獻時, 引納酒漿籩豆禮相助奠證之.” ○采蘋疏〉
- 周傳曰: “王子・公卿・大夫・元士之適子, 十五入小學, 二十入大學.” 〈王制疏〉
- 書大傳, 六事之機, 以縣示我, 我民人無敢不敬事, 上下王祀. ○注云: “六事, 貌・言・視・聽・思・心. 王, 極也.”
- 康誥傳曰: “天子有事, 諸侯皆侍, 尊卑之義.” 又曰: “宗室有事, 族人皆侍終日, 大宗已侍於賓奠, 然後燕私.” 〈特牲饋食疏〉
- 洛誥傳曰: “天下諸侯之來, 進受命於周, 退見文武尸者千七百七十三諸侯.” 〈王制疏〉
- 多士傳曰: “百里之國, 二十里之郊, 七十里之國, 九里之郊, 五十里之國,

三里之郊。”〈王制疏〉

- 多士傳曰：“天子堂廣九雉，三分其廣，以二爲內，五分其內，以一爲高。東房·西房·北堂，皆三雉。”〈明堂位疏〉
- 多士傳曰：“古者，后夫人將侍君，前息燭後舉燭，至於房中，釋朝服襲燕服，然後入御於君。鷄鳴，太史奏鷄鳴於階下，然後夫人鳴佩玉於房中告去。”〈周禮內司服及詩小星疏〉
- 書傳曰：“男三十而娶，女二十而嫁。”〈詩標梅疏〉
- 書傳曰：“外無曠夫，內無怨女。”〈詩雄雉疏〉
- 書傳曰：“天子將出，撞黃鍾之鐘，右五鐘皆應入，則撞蕤賓之鐘，左五鐘皆應，太師於是奏樂。”〈周禮樂師注〉
- 書傳曰：“羊屬火，豕屬水。”〈儀禮小牢註〉
- 書傳曰：“戰鬪不可不習，故於蒐狩以閑之也。”〈儀禮鄉射注〉
- 書傳曰：“古者，諸侯之於天子也，三年一貢土，一適謂之好德。再適謂之賢賢，三適謂之有功。”又云：“貢土一不適，謂之過，再不適，謂之敖，三不適，謂之誣。一紕以爵，再紕以地，三紕以地畢。”〈射義疏〉
- 書傳曰：“諸侯三年一貢，土於天子，天子命與諸侯輔助爲政，所以通賢共治，示不獨專，重民之至。大國舉三人，次國舉二人，小國舉一人。”〈公羊壯元年注〉
- 書傳曰：“三年一使，三公紕陟。”〈公羊隱八年疏〉
- 書傳曰：“司徒公·司馬公·司空公，各兼二卿。”〈周禮賈序○賈云：“三公下兼六卿。”〉

■逸書殘句〈附〉

(下一字)逸書之散見傳記者，梅氏收用殆盡，其有殘遺者，皆不雅馴，至於

西京以下子·史所出者,皆汲冢零文及雜緯旁支,不足信也.既蒐而棄,亦頗可惜,姑錄之.

- 書曰:“聖作則.”〈左傳昭六年叔向引之〉
- 夏書曰:“昏墨賊殺.”〈左昭十三年,叔向曰:“惡而探美爲昏,貪以敗官爲墨,殺人不忌爲賊.夏書曰云云皐陶之刑也.”〉
- 周書曰:“必參而伍之.”〈史記蒙恬傳〉
- 書曰:“恃德者昌,恃力者凶.”〈商君傳〉
- 書曰:“先其算命.”〈漢書律歷志〉
(下一字)楚世家引周書曰:“欲起無先.”〈武公語〉蘇秦傳引周書曰:“綿綿不絕,蔓蔓奈何.”蔡澤傳引書曰:“成功之下,不可久處.”主父偃傳引周書曰:“安危在出令,存亡在所用.”貨殖傳引周書曰:“農不出則乏其食.”戰國策引周書曰:“將欲取之,必姑與之.”〈任章傳〉漢書蕭何傳引周書曰:“天與不取,反受其咎.”若是者,皆從橫家雜書及兵家緒言,非六經之類也.
- 書曰:“大道亶亶,去其身不遠,人皆有之,舜獨以之.”〈賈誼新書君道篇○案.忠恕,違道不遠,卽此義〉
- 商書曰:“刑三百,罪莫重於不孝.”〈呂氏春秋孝行覽〉
- 書曰:“咨,四岳曰,‘裕汝衆,或有一人王者.’”〈白虎通德論〉
- 書曰:“不施予一人.”〈白虎通〉
- 書曰:“必立賞罰,以定厥功.”〈白虎通〉
- 書曰:“太社惟松,東社惟栢,南社惟梓,西社惟栗,北社惟槐.”〈白虎通〉
- 書曰:“圉圉升靈,半有半無,洪水浩浩,在夏后之訶,師乃摛來,就碁碁宮中之冗,食獮有爪而不敢以擗,以上陵慼,祖甲返攷攷,無幾幾巧言,我有{土/截}于西.”〈說文〉
- 書曰:“維高宗報上甲微.”〈孔叢子〉

(下一字)案. 魯語展禽曰:“上甲微能帥契者也. 商人報焉.”〈韋昭云:“上甲微, 契後八世, 湯之先也.”〉高圉太王, 能帥稷者也. 周人報焉, 造孔叢者竊此文而爲書也. 祭祀之典, 成於立國之初, 豈至高宗之時, 立其祀乎? 孔叢子僞也.

•周書曰:“大翰若翬雉.”〈說文〉

•周書曰:“北唐以閭.”〈儀禮鄉射記注○疏云:“見於國語.”〉

•周書作雒篇曰:“千里百縣, 縣有四郡.”〈左傳哀二年杜預注〉

(下一字)孔穎達詩疏云:“周書稱文王在程, 作程寐程典. 皇甫謐云, ‘文王徙宅於程, 蓋此謂也.’”〈皇矣疏〉

•周書曰:“大命世, 小命身.”〈大戴禮本命篇注〉

•唐誥 伯禽 禹刑 湯刑 九刑

(下一字)左傳祝佗曰:“昔武王克上, 成王定之. 分魯公以大路, 命以伯禽而封於少皞之虛. 分康叔以大路, 命以康誥而封於殷虛. 分唐叔以大路, 命以唐誥而封於夏虛.”〈定四年〉○又叔向貽書子產曰:“夏有亂政而作禹刑, 商有亂政而作湯刑, 周有亂政而作九刑.”〈昭六年〉

•太戊 豐刑

(下一字)殷本紀云:“伊陟贊言于巫咸, 作咸父, 作太戊.”〈詳見咸父條〉○漢書云:“康王十二年六月戊辰朔, 三日庚午. 故畢命·豐刑曰, ‘惟十有二年六月庚午朏, 王命作策豐刑.’”〈律曆志〉

•月采 月令

(下一字)漢書云:“古文月采篇, 三日曰朏.”〈律曆志〉○案. 召誥疏引周書·月令云‘三日粦朏’. 月采者月令也. 〈王應麟云:“律曆志引古文月采篇, 采當作令.”〉

(下一字)馬融論語注曰：“《陽貨篇‘鑽燧改火’注》周書·月令有改火之文，春取榆柳之火，夏取棗杏之火，夏取桑柘之火，秋取柞櫟之火，冬取槐檀之火。”《疏云：“周書，孔子所刪，晉太康中得之汲冢，其辭今亡。”》

•王會 史記 大聚 諡法 小武開 文傳

(下一字)右六篇竝見王應麟考異，今姑略之。《又詩芣苢疏引王會云：“芣苢，如李出於西戎。”○太誓疏引文傳》다.

참고문헌

원전

『定本 與猶堂全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與猶堂全書 補遺』, 경인문화사, 1969.

『尙書古訓』(구본): 가장본, 규장각본, 쓰쿠바대본.

『尙書知遠錄』: 가장본, 규장각본, 버클리대본.

『尙書古訓』(합편): 가장본, 신조선사본(경인문화사, 1970).

『尙書正義』: 北京大本(北京大學出版社, 1999), 上海古籍本(上海古籍出版社, 2007).

단행본

정인보, 『舊園文錄 中』, 연세국학총서 67, 태학사, 2006.

조성을, 『年譜로 본 茶山 丁若鏞』, 지식산업사, 2016.

최익한, 『여유당전서를 독함』, 서해문집, 2016.

『다산 필사본의 연구』, 다산학술문화재단, 2019.

논문

김문식, 「『상서지원록』 필사본의 원문 비교」, 『다산학』 10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7.

_____, 「다산 정약용의 『상서』 주석서 계열 고찰」, 『다산학』 23호, 다산

-
- 학술문화재단, 2013.
- 김보름, 「“여유당집”의 성립에 관한 고찰」, 『다산학』 18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1.
- _____, 「정약용 저작집의 형성과 전승」, 한국한중양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_____,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저술과 개정 과정 연구」, 『儒學研究』 56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1.
- 김언중, 「『여유당전서보유與猶堂全書補遺』의 저작별 진위문제에 대하여(下)」, 『다산학』 11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7.
- 노경희, 「다산茶山 저술 ‘고본稿本’의 성격과 자료 전승 현황」, 『다산학』 17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0.
- 장동우, 「『여유당전서』 정본사업을 위한 필사본 연구」, 『다산학』 7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5.
- 조성을, 「丁若鏞의 尙書研究 文獻의 檢討」, 『동방학지』 56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7.

국문요약

본 논문은 가장본家藏本『상서고훈』과『상서지원록』의 특징을 서지적으로 검토하고, 그동안 보고된 활자본과 이본들을 비교하여 각 이본들의 필사 시기와 필사의 선후를 살펴본 것이다.

가장본에는 정약용이 1810년 가을에 완성한 구본舊本『상서고훈』과 1811년에 완성한『상서지원록』,『상서지원록』과 구본을 합치고 송대宋代 이후 학자들의 주석을 추가하고 자신의 설을 덧붙여 1834년에 저술한 합편『상서고훈』이 포함되어 있다. 구본과『상서지원록』은 합편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하는 연구로, 합편이 나온 이상 역할을 다하여 “다산에게 버림받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구본과『상서지원록』은 정약용의 상서학尙書學이 변화 발전해 간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일정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가장본『상서고훈』2종과『상서지원록』은 모두 일부만 남아 있는 결절缺帙이지만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수정, 정리한 정고본定稿本으로서, 그동안 발견된 이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본『상서고훈』과『상서지원록』은 처음 저술한 이후 계속해서 검토 수정되었는데, 그것은 1834년 합편을 저술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전하는 이 책들의 필사본은 최후의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필사된 것이다. 가장본에 지시된 수정 내용 중 일부가 현전하는 필사본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이 그 사실을 말해 준다. 이에 비해 합편『상서고훈』에는 가장본의 수정 지시가 충실하게 반영된 점으로 보아 가

장본은 정약용이 합편을 저술할 때 직접 사용한 본이라고 볼 수 있다.

수정은 내용뿐만 아니라 장정에서도 이루어졌다. 구본 『상서고훈』의 표지에 있는 ‘舊本’이라는 글자는 새로운 본, 즉 합편 작성 이후에 장정을 새롭게 했거나 글자를 추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舊本’이라는 글자는 정약용의 친필일 수도 있으나 후손이 써넣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상서지원록』 표지에는 정약용이 1821년 5월에 완성한 정자 이름을 붙인 ‘채화정집菜花亭集’이라는 제목이 써여 있다. 이는 이 책의 장정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

구본 『상서고훈』의 필사 이본異本은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일본 쓰쿠바대학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두 이본은 가장본과 내용은 동일하나 각 권의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고, 『상서』 경문經文의 서술 방식도 다르게 된 부분이 있다. 이는 이 책의 최종본인 가장본이 완성되기 전에 필사가 이루어졌음을 말해 주며, 동시에 이 이본들이 1810년에 저술한 책의 원형에 더 가까운 구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가장본 『상서지원록』은 1969년 영인 출간된 『여유당전서보유』에 수록된 본의 저본임이 확실하다.

합편 『상서고훈』은 다른 필사본이 전하지 않고 1936년 신조선사에서 간행한 『여유당전서』에 실린 활자본이 유일한 본이고, 그것이 정본 『상서고훈』의 저본이 되었다. 신조선사본은 출간 초기부터 오탈자 등의 오류가 제기되었다. 신조선사본의 오류는 『정본』에서 일부 교감하였으나 대부분 그대로 계승되었는데, 가장본을 통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제어 | 다산 정약용, 『상서고훈』, 『상서지원록』, 가장본家藏本.

Abstract

Bibliographic Review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of *Sangseo gohun* and *Sangseo jiwonrok*

Kim Seong-jae

Translator,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This paper bibliographically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of *Sangseo gohun* and *Sangseo jiwonrok* and examines the transcription period of each variant copy together with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transcription.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consist of the old edition of *Sangseo gohun*, completed by Jeong "Tasan" Yak-yong in the fall of 1810, and *Sangseo jiwonrok* completed in 1811. It also contains the combined 1834 version of *Sangseo gohun*, which combines *Sangseo jiwonrok* with the old edition and has Song scholars' annotations and his own comments. Therefore, the old edition and *Sangseo jiwonrok* were the groundwork to produce the combined version. Given the appearance of the combined version, one might say that it was "books abandoned by Tasan." Still, the old edition and *Sangseo jiwonrok* have value as materials for examin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Jeong's studies of *Sangseo*(尙書).

The two family-owned editions of *Sangseo gohun* and *Sangseo jiwonrok* are odd volumes of which only parts remain, however, they are the final versions that Jeong revised and arranged and are different from the variant editions found afterward. The old editions of *Sangseo gohun* and *Sangseo jiwonrok* have been reviewed and revised since they were first written, and this is likely to have continued until the combined version was written in 1834. The manuscripts of these extant books were handwritten before the final revision was made. This is clear from the fact that some of the revisions identified in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are not found in the existing manuscripts. On the other hand, given that the revision instructions of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are faithfully reflected in the combined edition of *Sangseo gohun*, it may be inferred that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are the ones Jeong Yakyong used when he wrote the combined edition.

Revisions were made not only in the content of the book but also in the book cover. The word "Gubon"(舊本) on the cover of the old edition of *Sangseo gohun* should be regarded as a new edition, since it may have been that a new rendering of the book cover was made or letters were added after the combined edition was published. The letters gubon may be Jeong's handwriting, but it is also possible that one of his descendants wrote it. Additionally, on the cover of *Sangseo jiwonrok*, there is a title "*Chaehwajeong-jip*" written on it, named after a pavilion he completed in the fifth month of 1821. This suggests

that the book cover was made after the pavilion's completion.

The variant manuscripts of the old edition of *Sangseo gohun* are housed in the Kyujanggak Pavil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sukuba University in Japan. The two variants have the same content as the family-owned edition but each volume is arranged differently, and the *Sangseo* text is described differently. This indicates that the transcription was made before the family-owned edition(the final edition) was completed. Moreover, the variants are arranged in a manner that is closer to the original form of the book written in 1810. The family-owned edition of *Sangseo jiwonrok* is certainly the basis of the copy in the addendum of *Yeoyudangjeonseo*, published photo-typographically in 1969.

The combined edition *Sangseo gohun* has no manuscript edition and its only edition is the one published in *Yeoyudangjeonseo* by Shinjoseonsa in 1936. It became the basis for the original edition of *Sangseo gohun*. Errors such as typos were discovered in the Shinjoseonsa edition ever since its publication. Some errors in the Shinjoseonsa edition were partially revised in the original edition but most are present to this day. However, the family-owned edition gives us a chance to correct these errors.

Key Words | Jeong “Tasan” Yak-yong, *Sangseo gohun*, *Sangseo jiwonrok*,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